

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 가산점 안내

○ 적용방법

- 가산점은 직무지식검사 만점의 %로 가산되며, 과락(40% 미만)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
- 취업지원가점, 자격가점, 경력가점은 각각 합산
- 취업지원대상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각 시험별 만점의 %로 가산

	구 분	가 산 점 수	비 고
취업지원 가점 <small>[붙임2 참조]</small>	○ 취업지원대상자	10% 5%	
	○ 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	5%	
자격가점	○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, 도시계획기사, 토목기사, 정보처리기사, ○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 무사, 한국사능력1급	2%	- 자격 가점은 보유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- 최대 4%까지 인정 (예시. 정보처리기사 와 정보처리기능사 보유시 자격가점은 2%로 적용됨)
	○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,정보처리산업 기사, ○ 전산회계운용사 1급, 한국사능력2급	1.5%	
	○ 측량기능사, 전산응용토목제 도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 ○ 전산회계운용사 2급, 한국사능력3급	1%	
경력가점	○ 한국국토정보공사, 공무원(지적업무) 경력 - 2년 이상 - 1년 이상 - 9월 이상 1년 미만 - 5월 이상 9월 미만 - 3월 이상 5월 미만	5% 3% 2% 1% 0.5%	

취업지원가점 가산점수 적용 비율 안내

대 상 별	10% 가점	5% 가점
독립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애국지사 본인 · 순국선열 유족 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애국지사 가족 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국가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유공자 본인 ·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유공자의 가족 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
5·18민주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·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
특수임무수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·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
고엽제후유의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
저소득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